

##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2.9.개정)

**제2조 (정의)** 학칙 제5조 제4항 규정의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는 창의성 함양, 학습역량 과 문제해결력 강화, 비전 탐색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2021.2.9.개정)

**제3조 (위원회)**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승인 및 평가를 위하여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학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21.2.9.개정)

###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 학생상담지원센터장, 성인학습지원센터장, 교학처 팀장, 전공 및 교양 교수 포함 6인, 외부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2020.6.24.개정)(2021.2.9.개정) (2023.08.02.개정)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신청서 확인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021.2.9.개정)

2.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제6조 (디아코니아 도전학기 신청 자격 및 절차)

① 신청자격은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이며, 휴학생 및 수료생, 초과학기생은 제외한다. (2020.2.13.개정) (2021.2.9.개정)

②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 및 이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지도교수, 학점인정 교과목 개설 소속 학과장 확인, 교학처 도전학기제 담당자 확인 후, 학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2.9.개정),(2023.08.02.개정)

③ 학점인정 교과목은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운영 지침에 명시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에서 개설할 수 있다. (2021.2.9.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학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기간)** ①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기간은 재학 중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 신청은 최대 2학기로 제한한다. 단, 신청자에 한해 학점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을 승인할 수 있다. (2021.2.9.개정),(2022.4.21.개정),(2022.11.23.개정)

② 수행기간은 해당 학기 최소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학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디아코니아 도전학기 학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019.12.31.개정)(2021.2.9.개정)

**제8조 (등록금의 납부 및 경비)** ① 정규학기 등록금은 전액 납부하며, 방학기간의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등록금은 면제한다. (2019.12.31.개정),(2020.9.15.개정),(2021.2.9.개정),(2023.08.02.개정)

②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에 필요한 제경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9.12.31.개정) (2021.2.9.개정)

**제9조 (수강신청)** 신청서 제출을 통해 최종 승인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 디아코니아 도전학기 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시 승인받아 결정된 학점사항을 기재한 학점인정원을 학과장에게 확인 후 교학처로 제출, 학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1.2.9.개정),(2023.08.02.개정)

1. 학점인정의 범위는 1학기 최대 18학점으로 한다. (2021.2.9.개정)
2. 디아코니아 도전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21.2.9.개정)
3. 성적평가방법은 절대평가(P/NP)로 한다. (2019.12.31.개정)(2021.2.9.개정)

**제11조 (학점인정 절차)**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9.12.31.개정) (2021.2.9.개정)

1. 수행 학생은 수행 학기 8주차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보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평가 확인 메일 첨부)을 받은 중간보고서에 교과목 개설 학과 학과장 서명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다. (2021.2.9.개정),(2023.08.02.개정)
2. 수행 학생은 수행 학기 15주차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보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평가 확인 메일 첨부)을 받은 결과보고서에 교과목 개설 학과 학과장 서명을 받아 디아코니아 인재개발센터에 제출한다. (2021.2.9.개정),(2023.08.02.개정)
3.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행 학생이 제출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 인정원에 최종 성적을 부여하고 교과목 개설 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2023.08.02.개정)
4. 학과장은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확인, 검증하여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학점심의 위원회에 제출 (2021.2.9.개정),(2023.08.02.개정)
5. 학점심의위원회는 학점 심의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2021.2.9.개정)
6. 교학처는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의 평가 및 확인(확정)을 통해 최종 인정받은 학점을 전산에 반영한다. (2021.2.9.개정)

**제12조 (성적 및 성적증명서 표기)**

- ① 성적은 일반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석차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 ② 해당 학기에 ‘디아코니아 도전학기’ 표기를 하며, 인정 교과목명과 학점, 성적을 그대로 표기한다. (2021.2.9.개정)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30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운영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